

인천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가단2454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2020. 2. 2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접수 제367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원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합계 4,772,017원 및 그 중 원금 2,64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5669).

2) 위 법원은 2017. 10.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F은 2020. 2. 27.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법정상속분 3/11), 자녀인 피고, H, I, D(각 법정상속분 2/11)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와 G, H, I, D는 F의 사망 무렵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H, I, D는 각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접수 제3673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F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는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이었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이었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적극재산 없이 부채만 부담하고 있던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채무자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기는 하나 실제로는 F이 피고 몫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피고가 그 분양대금 1억 3,100만 원 중 2,330만 원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대금 1억 3,100만 원 중 피고가 부담한 2,33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17.786%는 피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므로 F의 상속재산 중 나머지 부분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와 F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 즉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위한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1) 제1항에 따라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같은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F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하며, 다만 피고가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에게 제공한 2,330만 원에 관하여 F과 피고 사이에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F의 소유로서 피고와 D를 비롯한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33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른 법정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2,330만 원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에서 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17.786%가 피고의 F에 대한 기여분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는 D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양승우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